

##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651
----------	-----

제출년월일 : 2000년 12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만료에 따른 본조례 폐지  
(시행기간 : 1995년 4월 1일 ~ 2000년 3월 31일)

### 2. 주요골자

- ◎ 조례폐지

### 3. 근거법령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
- ◎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조례부칙제 2항

붙임 :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조례

##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총무사회 제5장 생활민원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 [ 1995. 6. 19 ]  
조례 제147호

개정 1998. 9. 25 조례 제3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생활민원과장,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등기공무원 및 해당 공유토지 소재 읍·면·동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1. 법률지식이 풍부한자 : 2인 (변호사, 법무사 등)

2. 지역주민 : 2인 (법률소양이 있는 자)

3. 위원은 주무과에서 복수추천하여 심사결정후 시장이 위촉

④ 위원이 사망·질병·부상·이주·전출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할사안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3. 위원의 4촌이내의 친족이 당해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간사) ① 간사는 소관청의 지적담당주사로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준비, 회의록작성·비치,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등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하여 실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할신청에 대한 결정

2.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 분할조서의 결

4. 분할조서의 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3면 총무사회 제5장 생활민원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

5. 분할조서 의결절차에 위법에 있어 취소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의 재의결
6. 의결기간 연장에 관한 결정
7. 기타 부수적인 사항의 결정 등

제7조(위원회운영) ①의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등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일까지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관할 읍·면·동지역내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결정등) ①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 결정사유, 결정일자 및 결정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정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결정에 참여한 위원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00년 3월 31일 이전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편 총무사회 제5장 생활민원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

부 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